



## 일본 건설관련 정부조직의 편제

정보신청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 I. 건설관련 정부조직법제의 개요

일본의 건설관련 정부조직은 1948년 1월에 내무성(內務省) 국토국(國土局)의 업무를 인수하여 출발한 건설원(建設院)으로부터 시작된다. 1949년에는 ‘건설성설치법’(1948년 7월 8일 법률 제 113호로 제정)에 따라 건설원이 건설성(建設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건설성은 2001년 1월 5일까지 존재하였다. 하부조직으로는 건설경제국, 도시국, 하천국, 도로국, 주택국을 두었다. 특별기관으로 국토지리원을 두었고, 시설 등 기관으로 토목연구소, 건축연구소, 건설대학교를 두었다. 각 지방의 건설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호쿠(東北), 간토(關東), 호쿠리쿠(北陸), 주부(中部), 긴끼(近畿), 주우고쿠(中國),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에 지방건설국을 두었다.

일본국은 내각기능의 강화, 국가행정기관의 재편성, 국가행정조직과 사무 및 사업의 감량·효율화 등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12일에 ‘중앙성청 등 개혁 기본법’을 공포하였다. 1999

년 7월 16일에 법률 제100호로 ‘국토교통성 설치법’이, 법률 제102호로 ‘중앙성청 등 개혁을 위한 국가행정조직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같은 해 12월 22일에는 ‘중앙성청 등 개혁관계법 시행법’(법률 제160호)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1부 22성청으로 되어 있던 방만한 정부조직이 1부 12성청으로 대폭 감축되었다.

구 건설성을 비롯하여 운수성, 국토청, 홋카이도개발청이 조직·통합되어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으로 개편되었고, 2001년 1월 6일에 설치되었다. 개편에 따라 기존의 각 국과 기관들도 새로운 부서로 조직·통합되었다. 건설경제국은 구 운수성 운수정책국과 함께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으로 되었다. 도시국은 구 국토청 지방진흥국 등과 함께 국토교통성 도시·지역정비국으로 되었다. 시설 등 기관인 토목연구소는 2001년 4월에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가 발족한 후, 독립행정법인 토목연구소로 변경되었다. 건축연구소도 독립행정법인 건축연구소로 변경되었다. 건설대학교는 구 운수성 운수연구소와

통합하여 국토교통대학교로 재편되었다. 지방건설국은 지방정비국으로 개조되었다.

## II. 국토교통성의 구성

국토교통성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 장은 국토교통대신이 담당하고, 그 아래에 국토교통부대신, 국토교통대신정무관, 국토교통사무차관, 기감(技監), 국토교통심의관, 국토교통대신비서관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13개의 국(종합정책국, 국토계획국, 토지·수자원국, 도시·지역정비국, 하천국, 도로국, 주택국, 철도국, 자동차교통국, 해사국, 항만국, 항공국, 홋카이도국)과 대신관방, 정책통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 철도국, 자동차교통국, 해사국, 항만국, 항공국, 홋카이도국)과 대신관방, 정책통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교통성은 심의회 등을 설치한다(국토교통성 설치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국토심의회, 사회자본정비심의회, 교통정책심의회, 운수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심의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국토교통성 설치법 제6조 제2항). 이에 따라 중앙건설공사분쟁심사회, 중앙건설업심사회, 토지감정위원회,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건설회의, 중앙건축사심사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행정법인평가위

<표> 국토교통성의 조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특별기관으로 국립지리원과 소립원종합사무소를 두고 있다. 각 지방의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지분부국으로 지방정비국, 홋카이도개발국, 지방운수국, 지방항공국, 항공교통관제부를 두고 있다. 외국(外局)으로 선원노동위원회, 기상청, 해상보안청, 해난심판청을 두고 있다. 시설등기관으로 국토교통정책연구소,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국토교통대학교, 항공보안대학교를 두고 있다.

### Ⅲ. 국토교통성 내 건설관련 조직의 임무

국토교통성은 국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사회자본의 정합적인 정비, 교통정책의 추진, 기후업무의 건전한 발달 및 해상 안전과 치안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국토교통성 설치법 제3조).

구 건설성의 사무를 다루고 있는 종합정책국, 도시·지역정비국, 하천국, 도로국, 주택국, 지방정비국과 홋카이도개발국의 소관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종합정책국

종합정책국에서는 국토교통성의 소관사무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방침과 기타 정책의 기획 및 입안, 당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성의 소관사무의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국토교통성 조직령 제4조 제1호).

#### 2. 도시·지역정비국

도시·지역정비국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국토교통성 조직령 제7조).

- 대도시의 기능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과 입안의 추진에 관한 것(국토계획국과 정책통괄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
- 수도권정비계획, 근기권(近畿圈)정비계획 및 중부권개발정비계획의 추진에 관한 것,
-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특정지역의 정비 및 개발을 위한 대규모사업(수도권과 기타 각 대도시권내에서 행하는 것에 한함)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사무조정에 관한 것,
- 수도권의 기성시가지 및 근기권의 기성도시구역에서의 산업과 인구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
- 수도권근교 정비지대 및 도시개발구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1958년 법률 제98호)과 근기권근교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의 정비와 개발에 관한 법률(1964년 법률 제145호)에 규정된 처분관리계획에 관한 것,
- 대심도(大深度)지하의 공공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관한 것(정책통괄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
- 국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 및 입안과 그 추진에 관한 것,
- 호설지대(豪雪地帶)(호설지대대책특별조치법(1962년 법률 제73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호설지대를 말함. 이하 같음)의 설해방제와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과 입안 및 그 추진에 관한 것,

-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과 재해위험지역의 주거에 대한 집단적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의 원조 및 조성에 관한 것,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것,

- 경관법(2004년 법률 제110호)의 규정에 의한 양호한 경관 형성에 관한 것(지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

- 택지조성 등 규제법(1961년 법률 제19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 등 규제에 관한 것,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것(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에서 행하는 업무에 관한 것과 토지·수자원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

- 민간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항만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

- 시가지재개발사업, 유통업무단지조성사업과 기타 시가지의 정비개선에 관한 것(방재가구 정비사업과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에서 행하는 업무에 관한 것, 주택국과 항만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

- 방재가구 정비사업(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방재도시시설(밀집시가지에서의 방재가구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1997년 법률 제49호)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도시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의 정비에 수반된 것에 한함)의 조성 및 감독에 관한 것,

-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에서 행하는 업무에 관한 것,

- 주차장에 관한 것(도로국과 자동차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

- 도시개발자금대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에 관한 것(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에서 행하는 택지조성과 토지구획정리사업(택지의 조성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병행하여 행하는 것에 한함)에서 요하는 자금의 대부에 관한 것과 종합정책국 및 주택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

- 도시공원과 기타 공공공지(空地) 및 보승지(保勝地)의 정비와 관리(皇居外苑, 新宿御苑 및 京都御苑에 관해서는 그것의 정비에 한함)에 관한 것,

- 도시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관한 것,

- 시민농원의 정비·촉진에 관한 것,

- 옥외광고물에 관한 것,

- 古都(明日香村을 포함)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과 입안 및 그 추진에 관한 것,

- 하수도에 관한 것,

- 도시개발자금융통특별회계의 경리에 관한 것,

- 소립원(小笠原)종합사무소의 기구와 정원 및 운영상 요하는 경비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연락조정에 관한 것,

- 소립원종합사무소의 사무·운영·지도 및 개선에 관한 것.

### 3. 하천국

하천국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국토교통성

조직령 제8조).

- 하천·수류 및 수면(항만 내의 수면은 제외)의 정비, 이용, 보전 기타 관리에 관한 것,
- 수자원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것,
- 유역에서의 치수(治水)와 수리에 관한 시책의 기획, 입안과 추진에 관한 것,
- 공유수면(항만 내의 공유수면은 제외)의 매립과 간척에 관한 것,
- 운하(항만 내의 운하는 제외)에 관한 것,
- 사방에 관한 것,
- 지활(地滑), 경산(硬山) 및 급경사의 붕괴와 눈사태로 인한 재해방지에 관한 것,
- 해안의 정비, 이용, 보전 기타 관리에 관한 것(항만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
- 수방에 관한 것,
- 국토교통성의 소관에 관계된 공공토목시설(항만, 항만에 접한 해안, 하수도 및 공원을 제외. 제102조 제1호와 부칙 제4조 및 제14조의 2의 경우도 동일)에 관한 재해복구사업의 지도(도로와 관계되어 있는 공사 지도는 제외), 감독 및 조성에 관한 것,
- 공공토목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사무의 연락·조정에 관한 것,
- 재해대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방재업무계획의 책정,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진방재강화계획의 책정, 기타 방재에 관한 사업으로 국토교통성의 소관과 관계된 사무의 총괄에 관한 것(종합정책국의 소관사무는 제외),

- 지방공공단체등에서 위탁한 사무(제1호, 제2호, 제5호~제8호)와 관련된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경우에는 공사 관리를 행하는 것, 치수특별회계의 경리에 관한 것.

#### 4. 도로국

도로국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국토교통성 조직령 제9조).

- 도로의 정비, 이용, 보전 기타 관리(이것들과 관련된 환경대책 및 교통안전대책을 포함)에 관한 것(재해복구사업의 지도 중 공사 지도 이외의 것과 재해복구사업의 감독 및 조성에 관한 것은 제외),
- 유료도로에 관한 사업에 관한 것,
- 궤도법((軌道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의 인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수 및 준공기간의 지정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집행에 관한 것,
- 지방공공단체 등에서 위탁한 사무(국토교통성 조직령 제9조 제1호의 사무)와 관련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경우에는 공사 관리를 행하는 것,
- 도로정비특별회계의 경리에 관한 것,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일본고속도로보유·채무반환기구분과회의 서무에 관한 것.

#### 5. 주택국

주택국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국토교통성 조직령 제10조).



- 주택(부대시설을 포함)의 공급, 건설, 개량 및 관리와 그 거주환경의 정비에 관한 것,
-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가 행하는 업무에 관한 것(토지·수자원국과 도시·지역정비국의 소관사무는 제외),
-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가 행하는 자금의 융통, 대부채권의 양수, 채무의 보증과 주택융자보험에 관한 것(토지·수자원국의 소관사무는 제외),
- 재해지역의 토지와 건물의 권리 보전에 관한 것,
- 건축물(정화조 포함) 기준에 관한 것, 건축사에 관한 것,
- 건축물의 질 향상과 기타 건축의 발달 및 개선에 관한 것,
- 방재가구(防災街區)정비사업에 관한 것(도시·지역정비국의 소관사무는 제외),
- 개인시행사, 시가지재개발조합, 방재가구계획정비조합, 재개발회사,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및 지방주택공급회사가 시행하는 시가지재개발사업(도시계획에서 정한 중요한 공공시설의 정비를 수반하는 것은 제외)의 조성과 도시재개발법(1969년 법률 제38호)에 따른 감독에 관한 것,

-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가 행하는 건축물의 부지정비(임대주택의 건설과 함께 행하는 것과 중요한 공공시설의 정비를 수반하는 것에 한함) 조성에 관한 것,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도시재생기구분과회와 주택금융지원기구분과회의 사무에 관한 것.

## 6. 지방정비국과 홋카이도개발국

구 건설성 하의 8개의 지방건설국이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으로 개편되었다. 각 지방정비국은 국토교통성 소관사무 중 국토교통성 설치법 제31조 제1항 각호에 기재된 사무(홋카이도구역과 관계된 것은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장한다(국토교통성설치법 제31조 제1항).

국토교통성 소관사무 중 홋카이도구역과 관계된 것은 홋카이도개발국에서 담당한다(국토교통성설치법 제33조 제1항).

**김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